定 款

사단법인 미해군연맹한국협회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미해군연맹한국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NAVY LEAGUE OF THE UNITED STATES, KOREA COUNCIL’이라고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92, 에이동 3층(도화동,해링턴스퀘어)’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미국 해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등에 종사하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수고하는 장병과 군무원, 그 가족들(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노고를 위로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추진한다.

1. 작전, 훈련, 휴식 등의 목적으로 방한하는 함정 근무자의 입항 환영 행사지원
2. 한국에 주둔하는 대상자를 위해 해군·해병대 창설 기념일, 연말연시 주요 공식 행사 지원
3. 주한 미 해군·해병대 사령관 이취임식 행사 지원
4. 한국에 처음으로 부임하는 장병의 문화 체험 활동 지원
5. 우수 근무 장병 한국문화 배움 장학금 수여
6. 대상자들과 미해군연맹한국협회 간 친선 활동 지원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본회의 수익 활동 등)

① 본회는 설립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본회는 수익 활동에서 확보된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6조(조직)

본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회, 고문실, 감사실,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을 둔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구분,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개인회원, 평생회원, 법인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 사이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 및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정회원

가.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는 자(개인회원)

나. 소정의 평생 회비를 납부한 자(평생회원)

다. 소정의 기업 회비를 납부한 법인회원

2. 단체회원은 제3조(목적)에 동의하며 특정한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로서 회비 납부의 의무는 없으나 찬조금을 기부할 수 있다.

3.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4. 사이버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친 자로서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언제나 총회 회의록, 그 밖의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정관 및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이행하

여야 한다.

④ 정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만약 매년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는 회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⑤ 단체회원, 명예회원, 사이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징계할 수 있다.

1. 제3조(목적)에 위배되는 언행을 하였을 때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불이익을 끼쳤을 때
3. 본회의 사업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특별한 사유 없이 회비 납입을 거부할 때
5.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③ 전항 징계의 종류는 경고, 권리정지, 견책, 제명이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구성)

①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이상
3. 이사 5인 이상

4. 감사 2인 이하
5. 고문 10명 내외
② 사무총장, 수석 고문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3. 본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4.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분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 선출된 임원의 취임 시까지 계속 재임하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취임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시작한다.

제15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이사회,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고문은 해양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본 회에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 시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⑥ 사무국 직원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③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⑥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7일 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이메일 또는 SNS 등 사회관계망)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투표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위 제2항의 경우에는 해당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의 변경
2. 회장, 감사, 이사의 인준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연간 사업계획 승인
5.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에 제의된 사항
6. 해산 의결
7.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2조(회의록의 작성 등)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한 후 본회의 주사무소에 비치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
①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사무총장을 간사로 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⑤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⑦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 의결로 대신할 수 있다.

⑧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
2. 정관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안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회원의 가입과 제명
5.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재무 및 회계

제25(본회의 재산)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6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 증여 ·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원들의 회비와 비회원의 기부금 또는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8조(회계연도)

① 본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말일로 종료한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용한 재원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②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은 이월한다.

제29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0조(결산서 등)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전년도 말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분석보고서, 잉여금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해의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연간 모금액 및 집행 결과를 다음 해 4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1조(임원의 보수)

모든 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2조(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그 밖의 운영사항)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24년 3월 18일

발기인 (대표) 박성배 (인)

발기인 김해석 (인)

발기인 임흥대 (인)

발기인 조현택 (인)

발기인 유태삼 (인)

발기인 민충홍 (인)